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5, No. 137, pp.117-154
https://doi.org/10.29212/mh.2025..137.117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고려전기 女眞人에 대한 將軍職·鄕職 운용 양태와 의미

윤경진 | 경상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

목 차

1. 머리말
2. 將軍職의 운용 양태
3. 鄕職의 운용 양태
4. 將軍職·鄕職 이원적 운용체계의 의미
5. 맺음말

초 록 이 연구는 고려 현종-문종대 여진 교섭의 여러 양상 중 將軍職·鄕職의 수여 양태를 분석하고 그것이 이원적으로 운용되는 의미를 찾아본 것이다.

고려는 처음에 여진 대표자를 酋長으로 부르다가 중국에서 蕃長들에게 수여하던 武散階를 원용하여 여러 장군직을 주었다. 여기에는 歸德→懷化→柔遠→寧塞→奉國의 서열이 추출되며, 고려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굴곡도 파악된다. 향직은 고려초기 중앙 정계에서 사용하던 위계를 활용한 것이다. 향직은 여진인에 대한 보편적 위계로 운용되었으며, 장군직 보유자는 향직도 보유했으나 장군직을 우선하였다.

www.kci.go.kr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고려 군인이 正職과 鄕職을 공유하던 것을 원용한 것이다. 여진 추장은 향직의 보편적 체계를 통해 고려의 질서에 편입된 상황을 반영하면서 장군직을 통해 현지에서의 위세나 고려에 대한 공헌을 담아내었다.

주제어(Key Word) : 女眞, 將軍職, 武散階, 鄕職, 正職

원고투고일 : 2025. 10. 08. 심사수정일 : 2025. 11. 28. 게재확정일 : 2025. 12. 15.

www.kci.go.kr

1. 머리말

고려의 국가체제 형성 과정에서 女眞 문제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고려는 고구려 구지 수복을 위해 국초부터 적극적으로 북방 개척을 도모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에 살던 여진에 대한 정책을 수반하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여진의 침구를 막고 이들을 축출하며 영토를 넓혀가는 것이 핵심이었지만, 점차 회유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여진과 관련된 연구 또한 초기에는 외적 격퇴와 영토 개척이라는 맥락에서 주로 다루었지만,[1] 근래에는 고려 국가체제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에 교섭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2] 고려의 天下觀을 설명하는 중요 지표로 여진

1) 金庠基,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國史上의 諸問題』 4, 1959(『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1974); 朴賢緖,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羅滿洙, 「高麗前期의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軍史』 7, 1983; 金南奎,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 睿宗 2年 對女眞戰의 原因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慶大史論』 10, 1997; 김순자,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宋容德, 「고려의 一字名 羈縻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신수정, 「고려 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崇實史學』 30, 2013;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2) 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硏究』, 國學資料院, 1996; 林敬熙,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鄕職 授與」,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李美智, 「고려전기 異國人 入境의 유형과 실상 : 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2015; 임형수, 「고려전기 女眞에 대한 武散階 授與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이바른, 「고려 전기 여진 왕래와 '내부(內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67, 2021; 김진곤, 「10세기-12세기 초반 고려의 북방지역 女眞人 관리 정책」, 『韓國史學報』 95, 2024; 윤경진, 「고려 현종-문종대 女眞 교섭의 추이와 인식 변화」 『사림』 93, 2025.

www.kci.go.kr

문제를 다루었다.[3)]

하지만 다각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눈에 띄는데, 이는 무엇보다 자료적 한계의 탓이 크다. 여진 교섭 기사는 대개 "누가 와서 어떻게 교섭했다"라는 형태의 단편적 기사가 대다수이다. 이에 대한 고려의 대응도 물품이나 관직 하사와 같은 간단한 내용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종-문종대 여진 관련 기사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내용을 추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여진이 중심이 된 고려의 대외정책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눈길을 끈 부분이 바로 여진 추장에 대한 將軍織과 鄕職의 수여이다. 교섭 기사는 특정인이 다수의 무리를 이끌고 오는 형태이다. 이 인솔자는 대개 酋長에 해당하는데, 특정한 장군직이나 고려의 향직을 띠는 사례도 다수 보인다. 이 칭호들은 해당 인물의 위세 및 고려와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한다면 대여진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다.

교섭 여진인이 보유한 장군직은 형태상 武散階와 유사하며, 실제 일부 직함은 당·송 무산계에 보인다. 이에 장군직을 무산계로 간주하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한편 향직은 고려초기 중앙 정부의 위계로 사용되던 것으로서 文散階 도입 후 지방 향리나 여진 추장의 위계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여진 추장의 장군직·향직 보유에서 두 가지 문제가 지적된다. 하나는 장군직이 무산계 기능을 한 것이라면 그 서열이 존

3) 추명엽, 「고려전기 '번'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 2002; 노명호, 「해동천자의 '천하'와 번(藩)」,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추명엽, 「고려의 다원적 종족 구성과 '我國·我東方' 의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109, 2018; 추명엽, 「고려 '동번(東蕃)' 여진문제의 국제환경과 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동북아역사논총』 79, 2023.

www.kci.go.kr

재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충분치 않다는 점이다. 일찍이 나름의 서열을 추정한 연구가 있었지만,[4] 그 순서에서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다. 다른 하나는 장군직과 향직의 관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자가 상하 체계를 담당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5] 왜 굳이 일원적 체계로 운용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여진 추장의 장군직이 무산계의 원리를 채용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향직과 공존하는 독특한 체계로 운용된 만큼, 무산계를 준거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체적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곧 각각의 운용 양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조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본고는 이러한 시각에서 여진 추장의 장군직·향직 운용을 새로운 각도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여진 추장이 띠고 있는 장군직의 운용 양태를 분석할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 '酋長'이나 '將軍'을 칭하다가 점차 여러 명칭의 장군직을 띠는 추이를 보인다. 이것은 여진 추장의 장군직이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세에 기반하면서 고려의 기준에 따른 서열화가 작용한 것임을 보여주는데,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위세와 서열의 내용을 찾아볼 것이다.

다음에는 여진인에 대한 향직 운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향직은 고려 정부에서 사용하던 위계를 여진인에게 적용한 것이므로 뚜렷한 서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보편적 위계로 기능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실제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었는지 파악할 것이다.

---

4) 江原正昭,「高麗に州縣郡に關する一考察：女眞人の高麗軍への編入を中心にして」,『朝鮮學報』28, 1963.
반면 將軍號의 서열화는 무리가 있으며 여진인에게 지급된 칭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임경희, 앞의 논문, 2003).

5) 임형수, 앞의 논문, 2017.

www.kci.go.kr

끝으로 장군직과 향직의 관계를 알아볼 것이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려가 여진인에 대해 장군직과 향직을 이원적으로 운용한 이유 내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에 양자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사례를 분석하고, 고려의 軍士들이 正職·鄕職의 이원적 체계가 운용된 사실에 주목하여 이를 매개로 그 원리를 찾아볼 것이다.

2. 將軍職의 운용 양태

여진 교섭 기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기사에 언급된 대표자(인솔자)에 부가된 칭호이다. 보통 '女眞(東女眞·西女眞)'이라는 소속을 밝히고, 이어 해당 인물의 칭호와 이름이 나온다. 처음에는 칭호를 '酋長'으로 적거나 칭호 없이 인명만 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칭호가 없더라도 다수의 인원을 이끌고 있으므로 그 지위는 대개 추장급에 해당할 것이다. 이후 이들은 '將軍'을 칭하거나 여러 형태의 장군직을 띠는 경우가 많아지며, 한편으로 고려의 鄕職을 보유한 사례도 자주 보인다. 이는 고려가 자신과 직접 교섭하는 여진인을 일정한 체계로 편제하여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장군직과 향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는 자료 부족으로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주요 용례들을 통해 그 대략을 가늠해 보기로 한다.

구체적인 장군직을 가진 첫 사례는 현종 11년(1020) 3월에 來朝한 歸德將軍 弗那이다.[6] 이후 확인되는 장군직으로는 귀덕장군 외에 懷化將軍, 奉國將軍, 寧塞將軍, 柔遠將軍 등을 찾아볼 수 있다.

6) 『高麗史』 권4, 顯宗 11년 3월 甲子.

www.kci.go.kr

이들 외에 綏遠將軍, 懷遠將軍, 寧遠將軍, 平遠大將軍 등의 용례가 보이나 모두 한두 사례에 불과하다.

흥미로운 것은 한두 사례만 나오는 장군직의 경우 모두 '遠'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직함에서는 중복되는 글자가 없다는 점이다. 또한 영원장군은 고려 무산계에 보이는데, 이것이 유일한 사례라는 점은 오히려 이것이 誤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고려가 자체 무산계와 여진 장군직을 중복하여 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비추어 이들은 유원장군의 오기가 아닐까 한다.

여기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회화장군과 귀덕장군은 唐의 무산계에 보이지만 나머지는 그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당에서 두 장군직은 무산계 중 蕃長에게 사용하기 위해 따로 제정했으며, 宋에서도 번장에게 무산계에 상응하는 장군직을 수여하였다.[7] 이로 보아 고려가 당·송의 번장 무산계를 참고하여 여진 장군직의 명칭을 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고려에서 여진 장군직이 무산계로 인식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숙종 5년(1100) 반포한 赦宥 내용을 보면, 문무백관에게 爵 1급을 더하면서 東西 蕃長에게 무산계를 더해주었다.[8] 여기서 번장에게 수여되는 무산계는 기존에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장군직이 분명하다. 곧 여진 장군직은 무산계의 원리를 담고 있던 것이다.

다음에 각 직함은 공통적으로 將軍과 大將軍을 칭하는 경우가 보인다. 물론 대장군이 장군보다 높은 위세를 반영한다. 문제는 대장군·장군 구분과 장군직 구분 중에 어느 것이 우선하는가 하는 점이다. 일견 대장군과 장군의 서열 관계가 분명한 만큼 이를 전

7) 宋에서는 歸德·懷化 외에 寧遠·安遠·保順·安化·保義 등 기존에 없던 새 명칭을 가진 무산계가 수여되었다(임형수, 앞의 논문, 2017, 144쪽).
8) 『高麗史』 권11, 肅宗 5년 2월 乙巳.

www.kci.go.kr

제로 그 안에서 장군직 구분이 있었다고 보기 쉽지만, 각 장군직 안에서 대장군과 장군을 나눈 것일 가능성도 있다.

당의 무산계를 보면, 회화대장군은 정3품上, 회화장군은 정3품下이며, 귀덕대장군은 종3품上, 귀덕장군은 종3품下이다.[9] 이에 비추어 고려에서도 대장군과 장군은 특정 장군직 안에서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 경우 대장군·장군 구분과 직함 구분은 단선적인 서열체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부여된 것으로 짐작되지만 구체적인 준거는 알 수 없다.

이제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에 두고 장군직의 구체적인 운용 양태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부분은 여러 장군직의 서열 문제이다. 장군직 수여 사례를 보면 다른 직함으로 改授하거나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인물의 장군직이 달라지는 사례가 종종 보여 이들에게 실질적인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10]

먼저 다음 두 기사를 살펴보자.

① 서여진 추장 麻胡達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귀덕장군을 더하고[加] 전례대로 물품을 내려주었다.[11]
② 동여진 귀덕장군 高之問이 내조하니 회화장군으로 改授하고, 따라온 사람들에게도 모두 職을 주었다.[12]

①에서 마호달은 내헌 당시 '추장'이었는데 그에게 귀덕장군을 더해주었다. 이것은 추장이 장군직을 처음 받을 때 귀덕장군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②에서 고지문은 내조할 때 귀덕장군이었는데 회화

9) 『新唐書』 권46, 志36 百官1 兵部.
10) 일찍이 歸德→懷化→柔遠→奉國→懷遠→寧塞→寧遠→綏遠→平遠을 제시한 견해가 있다(江原正昭, 앞의 논문, 1963).
11) 『高麗史』 권8, 文宗 25년 4월 壬午.
12) 『高麗史』 권6, 靖宗 4년 정월 辛酉.

www.kci.go.kr

장군으로 고쳐주었다. '改'의 준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일단 회화장군이 귀덕장군보다 서열이 앞서거나 위상이 높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당의 무산계에서도 회화장군이 귀덕장군보다 상위이다.

한편 문종 27년(1073) 다수의 羈縻州 都領들이 교섭한 기사를 보면, 氈城州의 도령 봉국장군 耶好와 귀덕장군 吳沙弗이 등장한다.[13] 여기서 같은 지역 단위에서 야호가 먼저 기록되고 도령을 띤 것으로 보아 오사불보다 서열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賜名 기사를 보면, 야호는 改名과 함께 봉국대장군을 받았고, 오사불은 회화장군을 받았다. 여기서 해당 장군직 중에서 봉국장군이 상위 직함이라는 것과 귀덕장군보다 회화장군이 우위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곧 귀덕장군→회화장군→봉국장군의 서열이 추출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원장군과 영새장군은 현재의 사례만으로 그 위치를 가늠하기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장군직의 개념 구성이다. '歸德'과 '懷化'는 추상적 교화의 의미로 묶인다면, '柔遠'과 '寧塞'는 변경의 안정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귀덕장군이 처음 받는 장군직이라는 판단을 추가해 보면, 유원장군과 영새장군의 위세가 이들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奉國'은 궁극적으로 양자를 포괄하는 개념이어서 최상위 직함으로 추정된다.

이번에는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의 장군직 변화를 통해 서열 문제에 접근해 보자. 먼저 위에서 파악한 서열 관계에 부합하는 사례를 찾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阿骨은 현종 16년(1025) 정월과 19년 3월 기사에 귀덕장군으로 나오고,[14] 현종 21년 12월 기사와 정종 2년(1036) 2월 기사

13) 『高麗史』 권9, 文宗 27년 2월 乙未.
14) 『高麗史』 권5, 顯宗 16년 정월 庚寅.
『高麗史』 권5, 顯宗 19년 3월.

www.kci.go.kr

에는 영새장군으로 나온다.[15] 그리고 정종 6년(1040) 3월 기사에는 봉국장군으로 나온다.[16] 그가 점진적으로 승진하는 맥락이라고 보면 귀덕장군→영새장군→봉국장군의 서열이 추출된다. 이는 앞에서 판단한 내용과 부합한다. 阿豆는 정종 4년(1038) 8월 기사에 회화장군,[17] 문종 원년(1047) 8월 기사에 유원장군으로 나온다.[18] 耶思老는 문종 원년 6월 기사에 귀덕장군으로 나오며 회화장군으로 개수되었다.[19]

方鎭은 문종 31년(1077) 2월 기사에 회화장군,[20] 문종 37년(1083) 2월 기사에 영원장군으로 나온다.[21] 여기서 영원장군은 고려 무산계에도 있는 것으로서 여진 장군직과 중복하여 사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유원장군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

古刀達은 문종 7년 7월 가사에 회화장군,[22] 문종 12년(1058) 윤2월 기사에 영새장군으로 나온다.[23] 尼多弗은 문종 8년(1054) 10월 기사에 유원장군,[24] 문종 9년 2월 기사에 봉국장군으로 나온다.[25]

鹽漢은 정종 11년 3월 기사에 懷遠將軍,[26] 문종 4년 3월 기사에 영새장군으로 나온다.[27] 여기서 회원장군 또한 유원장군의 오기로

15)『高麗史』권5, 顯宗 21년 12월.
『高麗史』권6, 靖宗 2년 2월 己未.
16)『高麗史』권6, 靖宗 6년 3월 辛酉.
17)『高麗史』권6, 靖宗 4년 8월 丙寅.
18)『高麗史』권7, 文宗 원년 8월 甲子.
19)『高麗史』권7, 文宗 원년 6월 庚申.
20)『高麗史』권9, 文宗 31년 2월 丙午.
21)『高麗史』권9, 文宗 37년 2월 辛未.
22)『高麗史』권7, 文宗 7년 7월 辛酉.
23)『高麗史』권8, 文宗 12년 윤12월 丙子.
24)『高麗史』권7, 文宗 8년 10월 乙未.
25)『高麗史』권7, 文宗 9년 2월 乙巳.
26)『高麗史』권6, 靖宗 11년 3월 己巳.
27)『高麗史』권7, 文宗 4년 3월 丙午.

www.kci.go.kr

보이며, 이 경우 영새장군이 유원장군보다 서열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상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의 장군직 변화 내용을 앞서 추출한 내용과 연결하면, 귀덕장군→회화장군→유원장군→영새장군→봉국장군의 서열로 정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구도에서 벗어나는 사례도 일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추가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되는 인물이 高之閒이다. 그는 현종 11년(1020) 黑水靺鞨의 일원으로 來獻에 참여한 기사에서 처음 등장한다.[28] 그는 정종 원년(1035) 來朝 기사에는 소속과 직함이 동여진 봉국장군으로 바뀌어 있다.[29] 그리고 3년 뒤인 정종 4년 2월 기사에는 귀덕장군으로 나오며 회화장군으로 개수되었다.[30] 그런데 같은 해 12월 기사에는 그대로 귀덕장군으로 나온다.[31] 이어 정종 8년(1042) 내헌 기사에는 유원장군으로 나온다.[32]

고지문은 장군직 변화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사례인데, 해당 내용을 토대로 그의 장군직 추이를 정리하면 귀덕장군→회화장군→유원장군→영새장군→봉국장군의 순서이다. 이 내용은 짧은 기간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어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그는 어떤 이유에선가 잦은 장군직 변화를 겪은 것인데, 이는 고려 정부와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한다.

고지문은 처음 내조할 때 두 번째 인물로 언급되었다. 그런데 그가 처음 장군직을 칭할 때 가장 서열이 높은 봉국장군으로 나온다. 이는 그에게 가문의 위세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얼마 후 귀

28) 『高麗史』 권4, 顯宗 11년 정월 丙寅.
현종 12년 기사에 등장하는 黑水靺鞨 高之門은 그와 동일인으로서 이표기 사례로 짐작된다(『高麗史』 권4, 顯宗 12년 9월 乙未).
29) 『高麗史』 권6, 靖宗 원년 2월 辛巳.
30) 『高麗史』 권6, 靖宗 4년 정월 辛酉.
31) 『高麗史』 권6, 靖宗 4년 12월 甲戌.
32) 『高麗史』 권6, 靖宗 8년 2월 戊寅.

www.kci.go.kr

덕장군이 되는 것은 그러한 위상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고려와의 관계에 불편한 상황이 있었고 이에 가장 낮은 등급인 귀덕장군으로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내조에 따라 회화장군으로 올려준 것인데, 다시 귀덕장군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해당 조치는 실행되지 않은 듯하다. 그리고 다시 유원장군으로 나오는 것은 그의 서열이 다시 올라가기는 하지만 이전처럼 고려와 밀착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심증을 제공한다. 고지문 사례는 여진 추장의 장군직이 그들의 위세에 대한 추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고려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매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지문이 고려와의 관계에서 굴곡을 겪었음은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都兵馬使에서 아뢰기를, "東蕃의 추장 阿兜幹이 內附한 이래로 오랫동안 恩賞을 받았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거란에 投屬하니 죄가 막대합니다. 그 무리의 首領 高之問 등은 지금 蕃境에 있으니 몰래 군사를 보내 잡아다 關으로 들여와 그렇게 한 이유를 신문하고 법률대로 처벌하십시오"라고 하니 따랐다.[33]

위의 기사는 문종 원년(1047)의 것으로서 고지문은 고려를 배반하고 거란에 투속한 동번 추장의 黨與로 지목되었다. 여기서 그는 '首領'으로 지칭되었는데, 여기에는 그의 장군직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이는 고려가 군대를 보내 그를 잡아다 신문하고자 한 것에서 뒷받침된다.

이것은 물론 고지문이 고려를 거스르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한 응징이다. 고려가 그의 위치를 알고 잡아 오려고 했다는 것에서 그를 계속 주시하고 있었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동안 고려

33) 『高麗史』 권7, 文宗 원년 2월 丁卯.

www.kci.go.kr

에 반하는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일 것이다. 고지문의 장군직 변동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지문과 유사하게 장군직 변화를 보인 인물로는 開老와 阿加主, 沙伊羅가 있다. 개로는 덕종 즉위년(1031) 9월 기사에 회화장군,[34] 덕종 원년 7월 기사에 귀덕장군으로 나온다.[35] 그런데 그는 그사이 덕종 즉위년 10월 기사에는 장군직이 아니라 향직의 하나인 元甫로 나온다.[36] 이는 장군직에서 해임되었다가 다시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가주는 정종 7년(1041) 12월 기사에 봉국장군으로 나오지만,[37] 문종 원년(1047) 4월 기사에는 직함이 없으며 平遠大將軍에 제수되었다.[38] 그런데 문종 4년(1050) 3월 기사에는 유원장군 아가주와 회화장군 아가주가 모두 나와 예외적이다.[39] 동명이인일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사에 같은 이름이 나오는 상황을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 기재된 것일 수 있다. 같은 해 8월 阿加主·塩漢·沙伊羅 등이 억류 중이던 靜邊鎭副將 皇甫冲과 隊正 宋迎을 돌려보낸 기사가 보인다.[40] 아가주·염한이 4월 기사에 등장하는 것에 비추어 사이라도 해당 기사에 언급되었을 것이라고 보면, 회화장군 아가주는 실제로는 사이라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41] 그는 문종 10년(1056) 정월 기사에 다시 봉국장군으로 나오고,[42] 문종 16년(1062) 10월 기사에는

34)『高麗史』권5, 德宗 즉위년 9월 丙辰.
35)『高麗史』권5, 德宗 원년 7월 丁丑.
36)『高麗史』권5, 德宗 즉위년 10월 乙酉.
37)『高麗史』권6, 靖宗 7년 12월 壬午.
38)『高麗史』권7, 文宗 원년 4월 癸酉.
39)『高麗史』권7, 文宗 4년 3월 丙午.
40)『高麗史』권7, 文宗 4년 8월 辛巳.
41) 이 중 '平遠'은 '柔遠'의 오기로 판단되므로 유원장군 아가주가 앞서 나온 아가주에 해당할 것이다.
42)『高麗史』권7, 文宗 10년 정월 甲戌.

www.kci.go.kr

귀덕장군으로 나와 장군직의 변화가 보인다.[43]

그런데 전술한 문종 4년 3월 기사를 보면 말미에 염한 등 15인이 일찍이 변경을 범한 일이 있어 억류하는 조치가 실려 있다. 당시 아가주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년 8월 沒蕃人을 돌려보낸 기사에 염한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면,[44] 그도 염한과 비슷한 행적을 가졌을 개연성이 크다. 이 부분이 작용하면서 장군직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닐까 한다.

사이라는 정종 7년(1041)부터 여러 차례 유원장군으로 나오다가[45] 문종 원년(1047) 3월 기사에 봉국장군으로 나온다.[46] 그런데 문종 2년(1048) 정월 기사에는 귀덕장군으로,[47] 문종 3년 4월 기사에는 다시 봉국장군으로 나온다.[48]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이다. 유원장군에서 봉국장군으로 올라가는 인물과 귀덕장군을 띤 인물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문종 4년 3월 기사에 나오는 회화장군 아가주가 실제로는 사이라라고 보면, 그는 귀덕장군에서 회화장군이 된 것이어서 양자 모두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다른 하나는 그 또한 고려와의 관계에서 굴곡을 겪었을 가능성이다. 그는 정종 9년(1043) 4월 賊首 羅弗 등 494인을 회유하여 和州館에 와서 來朝를 청하였다. 이 때 有司는 이들이 인면수심이라며 병마사로 하여금 인원을 줄여 차례를 나누어 赴朝하게 할 것을 청하여 허락받았다.[49]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사이라보다 그가

43)『高麗史』권8, 文宗 16년 10월 庚子.
44)『高麗史』권7, 文宗 4년 8월 辛巳.
45)『高麗史』권6, 靖宗 7년 11월 己未; 8년 8월 庚辰; 9년 4월 戊戌·庚辰.
46)『高麗史』권7, 文宗 원년 3월 丙戌.
47)『高麗史』권7, 文宗 2년 윤정월 丙午.
48)『高麗史』권7, 文宗 3년 4월 丁亥.
49)『高麗史』권6, 靖宗 9년 4월 戊戌.

www.kci.go.kr

데려온 사람들이지만, 이들에 대한 의심은 사이라에게도 미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가 고려 정부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일시 귀덕장군으로 내려갔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 동일인으로 파악되는 인물의 장군직 변화를 통해 그 서열을 추출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들에 대해서도 해석을 도모하였다. 현실적으로 현존하는 자료만으로 여진 추장의 장군직 운용 양태를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대략 귀덕장군→회화장군→유원장군→영새장군→봉국장군의 서열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들은 대체로 고려 정부와의 관계에 따른 굴곡으로 판단된다. 이는 여진 추장의 장군직이 그들의 현지 위세를 기반으로 하지만, 한편으로 고려의 통제하에 운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 鄕職의 운용 양태

고려와 교섭하는 여진 추장 중에는 향직을 띠는 사례도 적지 않다. 향직은 본래 고려초기 중앙 정계에서 사용하던 위계이다. 이는 신라의 관등을 대신하여 태봉에서 제정된 것으로서 성종 때 文散階가 도입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여진 추장이나 향리에 수여하는 위계로 활용되었다.

여진 추장이 향직을 띤 첫 사례는 덕종 즉위년(1031) 10월 기사에 나오는 동여진 元甫 開老이다. 기록상으로는 定宗 3년(948) 9월 기사에 보이는 동여진 大匡 蘇無盖가 첫 사례이지만, 당시는 고려 정부에서 해당 위계를 쓰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 여진인이 실질적인 최고위인 대광을 받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www.kci.go.kr

이 사례는 후대의 기사가 잘못 편집된 것으로 판단된다.[50]

이후 여진인의 향직 보유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실제 향직 수여는 이보다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 두 기사를 보자.

① 동여진 阿梨古와 서여진 淩渠 등 100여 인이 와서 방물을 바치니 아울러[並] 爵을 내려주고 또 匹段을 내려주었다.[51]
② 동여진 牛那特烏伊弗등 30여 인이 와서 土馬와 兵器를 바치니 모두 爵과 衣物을 내려주었다.[52]

위의 두 기사는 현종 9년(1018)의 것으로서 『고려사』 기록에서 여진인에게 爵을 수여한 가장 이른 사례이다. 이후로도 작을 내려주거나[賜爵] 높여주는[增爵·加爵] 조치가 행해진 것을 보면,[53] 이것이 내부적으로 서열을 갖추고 있고 일정한 체계에 따라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이러한 속성을 띠고 여진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 체계는 향직뿐이므로 해당 기사에 나오는 爵은 향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현종 3년(1012) 30姓 부락을 이끌고 맹약을 청한 毛逸羅는[54] 현종 10년 무리를 이끌고 내조했을 때 階織을 올려주는 은전을 받았다.[55] 그리고 현종 9년에 내조한 尼亏弗에 대해 "增授鄕職"하는 조치가 있었다.[56] 이 시기는 여진 추장의 장군직이 처음 확인되는 현종 11년보다 앞선다. 이와 대비하면 모일라가 받은 계

50) 윤경진, 「고려초기 外夷 인식과 黑水의 실체」, 『한국문화』 106, 2024, 138-139쪽.
51) 『高麗史』 권4, 顯宗 9년 3월
52) 『高麗史』 권4, 顯宗 9년 5월
53) 『高麗史』 권5, 顯宗 20년 윤2월; 『高麗史』 권5, 德宗 2년 11월 辛卯.
54) 『高麗史』 권4, 顯宗 3년 윤10월.
55) 『高麗史』 권4, 顯宗 10년 8월 壬子.
56) 『高麗史』 권4, 顯宗 9년 9월 丁亥.

www.kci.go.kr

직 또한 향직이 분명하다. 이 사례들을 연결해 보면 현종대에 작(계직·향직) 수여가 본격화되었으며, 그런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종 9년이 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이즈음에 여진 교섭이 급증하는 양상과 맞물려 있다. 고려는 현종 9년에 들어서면서 거란과의 전쟁에 대비하며 여진을 적극적으로 招諭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주요 회유책의 하나로 향직 수여가 활용된 것이다. 이는 다수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위에 제시한 사례를 보면 대상자 수가 100여 인과 30여 인으로 되어 있다. 기사에서 '아울러[並]'라고 했으므로 이는 함께 온 사람들에게 널리 적용된 것이 분명하다.

여진인에 대해 향직이 보편적 위계로 사용되면서 이미 향직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增爵 조치도 이루어졌다. 전술한 모일라는 현종 16년 내조했을 때 변경에서 공이 있다고 하여 大匡을 '加授'하였다.[57] 대광이 실질적으로 최상위 위계임을 감안하면,[58] 그는 이미 향직을 보유한 상태였을 것이다. 일반적 승진이 아니라 邊功에 따른 특별 포상이어서 높은 위계를 받은 것이다.

또한 다수의 인원에 대한 증작 조치도 찾아볼 수 있다. 몇 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이 달에 동·서여진 阿忽·沙一羅·骨盖 등 100여 인이 와서 土馬와 兵器를 바치니 爵 1급을 늘려주었다.[59]
② 동여진 元甫 開老 등 46인이 내조하니 爵을 늘리고 물품을 내려주었다.[60]

57) 『高麗史』 권5, 顯宗 16년 정월 辛亥.
58) 大匡은 2품이지만 그보다 상위인 重大匡과 三重大匡은 대개 追增織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59) 『高麗史』 권5, 顯宗 20년 윤2월.
60) 『高麗史』 권5, 德宗 즉위년 10월 乙酉.

www.kci.go.kr

③ 동여진 회화장군 尼冬火 등 26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치니 각기[各] 爵을 늘리고 물품을 차등있게 내려주었다.[61]

위의 기사들은 내헌·내조한 여진인에게 증작 조치가 이루어진 사례이다. ③을 보면 인솔자는 1명만 말했는데 포상 부분에서는 '各'이라 하여 내헌한 사람 각각에 대한 증작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①과 ②의 경우에도 다수의 인원에게 증작이 있었을 것이다.

다음 기사 역시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① 서여진 弓火 등 156인이 關城을 개척할 때 모두 공로가 있으니 爵 1급을 더하였다.[62]
② 동여진 귀덕장군 高之問이 내조하니 회화장군으로 고쳐주고 수행한 사람들[傔從]에게도 모두 職을 주었다.[63]

①은 장성을 쌓을 때 협조한 여진인 195명에게 보편적으로 작을 높여준 조치를 담고 있다. ②는 앞서도 인용한 자료인데, 여기서 傔從은 장군 고지문을 따라온 사람들을 통칭한다. 다른 기사에서 장군 등이 데리고 온[率] 인원들과 다르지 않다. 이들에게 '모두[皆]' 職, 곧 향직을 주었다는 것에서 여타 사례 역시 향직이 포괄적으로 수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여진인에 대한 향직 수여가 가지는 의미는 거란과 관련된 사례에서 잘 나타난다. 전쟁 후 경색된 대거란 관계에 대응하여 고려는 장성 축조와 더불어 여진 초유라는 외교적 대응을 도모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거란의 초유를 받은 여진 추장을 고려 쪽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는데[64], 향직은 그러한 전환을 보여주는 중

61) 『高麗史』 권8, 文宗 12년 12월 丁酉.
62) 『高麗史』 권5, 德宗 2년 11월 辛卯.
63) 『高麗史』 권6, 靖宗 4년 정월 辛酉.
64) 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여진인의 고려 왕래 조건은 거란과의 통교를 금하는 것이

www.kci.go.kr

요한 지표로 활용되었다.

이 원리는 우선 다음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 동북여진의 首領 太史 阿道閒 등 59인이 내조하니 有司가 말하기를, "태사는 거란의 職名입니다. 아도한이 지금 귀화했으니 正甫로 改授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따랐다.[65]

위의 기사는 정종 2년(1036) 내조한 여진 추장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 당시 아도한은 太史[太師]라는 거란 직함을 띠고 있었는데,[66] 이는 앞서 그가 거란에 내조했음을 의미한다. 고려는 그를 초유하면서 거란 직함을 향직으로 대체하여 내려주었다. 실제 아도한은 이듬해 윤4월 내조 기사에는 正甫로 나온다.[67]

그런데『金史』에는 거란의 태사 직함에 대해 "遼 사람이 節度使를 太師라고 불렀는데, 景祖부터 太祖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칭호가 있었다"[68]라고 설명되어 있다. 절도사는 지방 군권을 담당한 직임이므로 여진 추장의 태사 칭호는 해당 부락의 군사권자임을 공인하는 의미가 있다.

大宛(大完) 직함을 가진 추장 역시 같은 맥락을 보인다. 덕종 즉위년(1031) 6월에 내헌한 沙伊羅는 '將軍大宛'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69] 정종 원년(1035) 8월에 내조한 皆多漢과[70] 동년 12월

었다고 보기도 한다(이바른, 앞의 논문, 2021, 201쪽). 여진 초유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들을 고려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이는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일반 왕래에서까지 거란과의 통교 금지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65)『高麗史』권6, 靖宗 2년 4월 乙丑.

66) 사례에 따라서는 '太師'로 나오기도 하는데 동일한 직명으로 판단된다.

67)『高麗史』권6, 靖宗 3년 윤4월 壬辰.

68)『金史』권1, 本紀1 世紀.

69)『高麗史』권5, 德宗 즉위년 6월 乙未.

70)『高麗史』권6, 靖宗 원년 8월 庚辰.

www.kci.go.kr

에 내조한 高陶化도[71] '大完' 직함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大宛과 大完은 같은 직명으로 판단된다. '장군'이 여진 추장으로서 지위를 나타낸다면 '대완'은 거란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들 역시 고려와 교섭하면서 대완을 대신하여 향직을 받았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가 참고된다.

> 우리는 일찍이 伊齊村에 살며 거란의 大完〈職名이다〉이 되었는데, 최근 재차 招諭를 입어 己酉年 11월에 赴朝하여 은혜로운 선물을 많이 받고 또 관직도 받았습니다.[72]

위 기사는 문종 27년(1073) 平虜鎭 근처의 蕃帥인 유원장군 骨於夫와 覓害村의 要結 등의 上奏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들은 거란의 大完으로 있다가 고려의 초유에 따라 문종 23년(1069) 내조하였고[73] 이에 따라 선물과 官職을 받았다. 여기서 '관직'은 개념상 그가 띠고 있던 장군직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이라가 '將軍大宛'으로 나오는 것과 아도한이 대완 대신에 향직를 받은 것, 그리고 要結은 장군직을 칭하지 않은 것 등을 감안하면 위에서 '官職'은 향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곧 향직은 장군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여된 것이다.

다음 기사에서도 거란 관직을 대체하는 고려 향직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 서여진의 須于那 등 7인이 내조하여 北朝에서 받은 職牒을 바쳤다. 유사가 元甫의 職으로 改授할 것을 청하니 따르고 金帛을 내려주었다.[74]

---

71)『高麗史』 권6, 靖宗 원년 12월 壬子.
72)『高麗史』 권9, 文宗 27년 5월 丁未.
73)『고려사』에서 骨於夫의 내조는 확인되지 않는다.
74)『高麗史』 권9, 文宗 33년 4월 己酉.

www.kci.go.kr

위의 기사는 문종 30년(1076)의 것으로서 北朝는 거란을 가리킨다. 수우나 등은 거란으로부터 받은 직첩을 바치고[75] 대신 향직을 받았다. 이는 太史 아도한이 귀화하면서 正甫를 제수받은 것과 같은 원리이다.

또한 문종 8년(1054)에는 동여진 유원장군 尼多弗 등 28인이 내헌하면서 蕃人 實彬·鹽漢·比丹·摩里弗 등 4인을 데리고 왔다. 이들은 이미 거란에서 관직을 받은 상태에서 고려에 귀부한 것인데, 니다불과 4인에게는 加等하는 조치가 있었고 나머지는 물품을 내려주었다.[76] 거란 관직을 가지고 있던 4인에게는 새로 향직이 수여되었을 것이다. 이 때 유원장군 니다불도 가등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나머지 4인과 연계된 것을 보면 그 역시 향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에서 승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77]

이처럼 거란으로부터 직을 받은 추장을 초유하는 사례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고려가 이미 거란에 내조했던 여진 추장을 적극 초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종 21년(1030) 흥요국 반란 이후 정종초까지 거란과의 관계는 경색되어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고려는 여진을 적극적으로 초유하였다. 이 시기에 여진의 교섭 회수가 급증하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여기에는 이미 거란과 교섭한 부류에 대한 적극적인 회유도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향직의 기능이다. 거란 직함을 대신하여 향직을 주었다는 것은 해당 인물을 고려의 질서에 편입시키는 의미가 있다. 특히 태사(절도사)를 장군직이 아니라 향직으로 대체하는 것은 결국 거란이 용인한 군사권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된

75) 이 직첩은 앞서 언급한 太史나 大完에 대한 것으로 짐작된다.
76) 『高麗史』 권7, 文宗 8년 10월 乙未.
77) 4인만 加等하고 나머지는 물품만 내려준 것은 현종 때 다수의 인원에게 '아울러' 賜爵·增職한 것이나 정종 4년 傔從에게 '모두' 授職한 사례와 대비된다. 이는 문종대 이후 여진인에 대한 향직 수여가 이전보다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닐까 한다.

www.kci.go.kr

다. 여진의 장군직 자체도 무산계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개의 장군직만으로 운용되는 양상은 이것이 군사권자로서 '장군'의 일반적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장군직으로의 전환은 명칭은 바뀌더라도 거란의 조치를 계승하는 맥락이 된다. 이에 향직으로 바꾸어 그 속성을 해소한 다음, 고려의 기준에서 새로 장군직을 수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여진에게 부여한 장군직과 향직이 유기적인 체계로 운용되었음을 시사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천착해 보기로 한다.

4. 將軍職·鄕職 이원적 운용체계의 의미

앞에서는 여진인의 위계로서 장군직과 향직이 운용되는 양태를 각각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고려가 이러한 이원적인 체계를 채용한 맥락과 의미를 찾아보기로 한다. 먼저 짚어볼 부분은 두 직제 모두 고려가 수여하는 것이지만 그 성격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장군직은 기본적으로 해당 인물이 현지에서 가지는 위세를 공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장군직은 세습의 속성을 띠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음 기사는 장군직 세습의 일단을 보여준다.

> 서여진 추장 懷德의 아버지 尼亏弗은 先朝부터 邊功이 있으므로 회덕에게 봉국장군을 제수하였다.[78]

위의 기사는 문종 21년(1067)에 내린 制書로서 서여진 추장 회덕에게 장군직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의 아버지

78) 『高麗史』 권8, 文宗 24년 8월 己卯.

www.kci.go.kr

니울불이 선조 때부터 변공을 세운 데 따른 것이었다. 니울불은 현종 9년(1018) 내조하였고 덕종 2년(1033)과 정종 8년(1042) 기사에 '장군'으로 나온다.[79] 이는 가문 차원에서 공로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80] 회덕은 아버지의 장군직을 세습한 셈이 된다.

반면 향직은 고려가 수립한 체계에 여진인들을 편입시키는 것이므로 고려 정부와의 관계성이 우선적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내조한 다수의 인원에게 직을 올려주는 조치를 볼 때 향직 보유자는 장군직에 비해 훨씬 보편적이며, 대부분 장군직이 없었을 것이다.[81] 그리고 고려의 기준에서 다수의 인원을 일원적 체계를 통해 서열화시키는 것이므로 원론적으로 현지에서의 위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향직의 일반성을 고려할 때 장군직을 칭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향직을 가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후술하듯이 문종 27년(1073) 기사에서 將軍으로 올라가는 대상자가 향직의 4품에 해당하는 大常(大相)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향직이 장군 이하의 하위 무산계 역할을 대신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82] 하지만 왜 굳이 향직을 전면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이원화된 방식을 썼는지 의문이

79) 『高麗史』 권5, 德宗 2년 3월 辛未; 『高麗史』 권6, 靖宗 8년 3월 甲子.

80) 이런 경우 해당 인물은 처음부터 높은 서열의 장군직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 앞서 살펴본 高之問에게서 그러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81) 이에 무산계는 번장들을 회유하기 위해, 향직은 고려에 복속을 표시한 모든 여진인에게 수여되었다고 지적된 바 있다(金美葉, 「高麗前期 鄕職·武散階의 重複支給硏究」, 『誠信史學』 9, 1991, 55-63쪽). 논자는 여진인의 무산계를 고려 무산계에 보이는 寧遠將軍에 국한하여 이해하였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장군직 운용과 거리가 있다. 다만 무산계의 특수성과 향직의 보편성을 대비한 부분은 장군직 운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한편 여진의 경우 고려의 세력권 밖에 있는 자에게는 무산계를, 세력권 안에 있는 자에게는 향직을 주었다고 보았으나 보편적 위계로서 향직을 바탕으로 장군직이 주어지는 형태이므로 이 구도를 고려 세력권 소속 여부로 구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층위에서 작동하는 기제라는 구도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82) 임형수, 앞의 논문, 2017, 418-419쪽.

www.kci.go.kr

여전히 남는다.

실제 장군직은 최소 5개가 존재하고 각기 장군과 대장군의 구분이 있었는데, 이는 장군직을 4품 大相의 상위 위계로 설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또한 장군직의 첫 사례는 현종 11년(1020)의 귀덕장군 弗那인데 현종 16년 毛逸羅가 大匡(2품)으로 加授된 예가 있어[83] 향직이 장군직의 하위 무산계로 운영되었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다. 장군직과 향직이 상하관계는 있지만 하나의 체계로 묶여 있었다기보다 각기 기능이 달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교섭 기사에서 특정인이 장군직과 향직을 동시에 칭한 경우가 없다. 이는 장군직과 향직을 모두 보유했더라도 장군직의 규정력이 커서 따로 향직을 칭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이 경우 향직만 칭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장군직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문종 27년(1073) 다수의 都領이 內附한 기사가 주목된다.[84] 당시 내부한 인물은 대개 기미주 명칭과 도령 직함을 칭하고 있으며, 대부분 장군직이나 향직을 띠었다. 일부는 '도령'만 밝히거나 '蕃長'을 칭한 예도 있다.[85] 이들에게는 모두 이름을 내려주었고, 더하여 장군직 또는 향직과 관련된 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기존에 장군직을 가진 사람은 대장군으로 올려주거나 다른 장군직을 제수하였다. 귀덕장군 高舍는 회화대장군이 되었고, 봉국장군 耶好와 多老는 모두 봉국대장군이 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장군직 운용에 기반하여 승급해 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기존에 향직을 갖고 있던 사람은 새로 장군직을 받거나 상

83) 『高麗史』 권5, 顯宗 16년 정월 辛亥.
84) 『高麗史』 권9, 文宗 27년 2월 乙未.
85) 都領은 州 명칭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을 대표한다는 의미로 부여된 직함으로 생각된다. 개중에는 한 州에 복수의 도령이 나오는 경우도 보인다.

www.kci.go.kr

위의 향직을 받았다. 대상 古刀化는 회화대장군을 받은 반면, 元甫(4품下) 阿忽은 대상을 받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는 일견 대상과 장군직 사이에 어떤 경계선이 존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양자를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는 분명한 근거는 없다. 그보다 향직 보유자의 경우 향직을 올려주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부는 다른 조건 등에 따라 장군직이 수여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듯하다.

이 경우 대상 위계가 포상 과정에서 장군직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이 될 수 있었지만, 그보다 상위의 향직 수여가 없었다거나 해당 조치가 상하 위계에 따른 순차적 승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장군직은 현지에서의 위세나 공로를 인정하는 데 본령이 있으므로 가문 배경이나 특별한 공로를 통해 대상보다 낮은 향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군직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대상에 이른 뒤 장군직을 받지 못하고 더 높은 향직으로 올라가는 상황도 상정된다.

셋째, 기존에 장군직이나 향직이 없던 사람에게는 공통적으로 대상을 주었다. 阿忽이 원보에서 대상이 된 것과 대비해 보면, 당시 대상 수여가 기존 향직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이 내부하여 "乞爲郡縣"을 청한 데 따른 것으로, 모두에게 이름을 내려준 조치와 조응한다.

이상의 내용에서 향직이 교섭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수여되는 위계였다면, 장군직은 현지에서의 위세나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는 장치였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섭 기사에 향직을 띠고 등장하는 사람은 따로 장군직을 가지지 않은 경우로 보이지만, 교섭 주체로 열거되는 것은 해당 부락에서 어느 정도 위세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은 추장 가문의 일원으로서 일정 지위에 오르거나 조건이 되면 장군으로 임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종 원년(1032) 내헌 기사에 正朝로 나오는 古之門은[86] 이듬해

www.kci.go.kr

내조 기사에는 大相으로 나온다.[87] 그가 동일인이라면[88] 그는 1년 만에 정조(7품上)에서 대상(4품上)으로 승진한 것이다. 그런데 동년 10월 내조 기사에는 유원장군으로 나온다.[89] 그의 승진은 고위 향직을 거쳐 장군이 되는 형태이다.

그런데 덕종 3년(1034) 2월 내헌 당시 佐尹(6품下)이었던 阿刀閒은 동년 3월의 내헌 기사에는 봉국장군으로 나온다. 양자의 시차는 한 달에 불과하여 중간적 조치를 생각하기 어렵다. 결국 그가 동일인이라면 대상까지 오르기 전에 장군이 되는 셈인데, 그것도 서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봉국장군이 되고 있다. 이는 그의 부친이 봉국장군이었고 이를 세습하는 형태로 수여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술한 高之問의 상황과 비슷하다.

한편 고려가 장군직과 향직의 이원적 체계를 통해 여진인을 관리한 것은 軍士의 위계 운용 원리를 원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선 다음 두 기사부터 살펴보자.

① 병부가 아뢰기를, “郎將 秦明, 柳高價, 康孝 등 74인에 대해 爵 1급을 올려주어[增爵一級] 邊功을 포상할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따랐다.[90]

② 병부가 아뢰기를, “中郎將 蔡宏, 李康 등 159인은 아울러[並] 戰功이 있으니 爵 1급을 올려줄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따랐다.[91]

---

86)『高麗史』권5, 德宗 원년 11월 丙子.
87)『高麗史』권5, 德宗 2년 6월 丙辰.
88) 古之門은 덕종 원년에는 西女眞, 덕종 2년에는 東女眞으로 나와 동명이인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동여진과 서여진의 구분이 확립된 것이 아니고 동일인이 교차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실재한다. 향직 보유의 맥락으로 볼 때 두 기사의 古之門은 동일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高之問과는 다른 사람이다.
89)『高麗史』권5, 德宗 2년 10월 癸巳.
90)『高麗史』권4, 顯宗 7년 정월 壬戌.
91)『高麗史』권4, 顯宗 7년 2월 庚辰.

www.kci.go.kr

위의 두 기사는 각각 현종 7년(1016) 정월과 2월에 변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增爵 1급의 포상을 내린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대상자는 74인과 159인이어서 포괄적인 조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군인들이 받은 爵의 내용은 직접 드러나지 않으나 통상적 측면에서 무산계와 향직을 생각할 수 있다.[92]

목종 2년(999) 서경에 행차한 후 兩京·諸鎭의 군사로서 80세 이상의 有職者는 增級하고 無職者는 陪戎校尉를 제수한 조치가 있었다.[93] 여기서 무직자가 무산계 9품인 배융교위를 받는 것을 보면, 당시 무산계가 운용되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해는 성종 14년(995) 처음 무산계가 도입된 지 불과 4년이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무직자에게 배융교위를 주는 것을 보면 무산계가 장교와 사병을 망라하는 군사 일반의 위계로 자리하지 않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치는 처음 장교들에 대해 부여되던 무산계가 일반 군인에게도 수여되기 시작하는 단초로 해석할 수 있다.[94]

그런데 이후 기사를 보면 군인들이 향직을 받는 상황이 나타난다.

> 兵部에서 아뢰기를, "正輔 李龍奉과 正朝 任述光 등 30인은 모두 邊功이 있으니 鄕職 1급을 더해줄 것을 청합니다"라고 하니 따랐다.[95]

위의 기사는 현종 8년(1017) 변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향직을 더해주는 조치를 담고 있다. 이에 준하여 보면 전년에 있던 증작 조

92) '增級'으로 표현되는 사례도 보인다(『高麗史』 권4, 顯宗 9년 5월 壬午).
93) 『高麗史』 권3, 穆宗 2년 10월.
94) 목종 2년 기사에서 職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문맥으로 보면 有職과 無職의 구분이 무산계 보유 여부로 보일 수 있지만, 무산계 수여가 보편화되지 않은 도입 초기 상황임을 고려하면 무반직 보유 여부일 수도 있다.
95) 『高麗史』 권4, 顯宗 8년 7월 庚子.

www.kci.go.kr

치 또한 향직의 승급으로 이해할 수 있다.[96]

그런데 위에서 포상 대상자를 대표하여 열거된 두 사람은 모두 향직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현종 7년 사례에는 대표자가 낭장과 중랑장으로서 무반직을 띠고 있는데,[97] 목종 2년 기사를 감안하면 무산계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하나는 일반 군인의 위계가 무산계가 아니라 향직으로 귀착되었다는 것이다. 목종 2년 조치를 보면 군사의 위계는 무산계의 확대 적용으로 나아갈 상황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향직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현종 즉위 후 계속된 거란과의 전쟁 때문으로 보인다. 곧 많은 군공자가 배출되면서 이들에 대한 포상이 필요했는데 당초 무반의 위계로 도입된 무산계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중앙 정부에서 기능이 소멸한 향직을 군인들의 위계로 채용함으로써 승급을 통한 포상 효과를 유도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향직 수여가 확대되면서 장교와 사병을 아우르는 보편적 체계로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에 수반하여 무산계는 소멸하게 된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무반(장교)이 받는 무산계와 군인(사병)이 받는 향직이 공존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이 점차 향직으로 일원화되었다. 그런데 장교와 사병의 구분은 실재하는 것이고 이는 당초 무산계의 보유 여부를 통해 표현되었다. 이 구분은 향직으로 위계가 단일화되더라도 남을 수밖에 없다.

다음 두 자료는 이러한 복합적 양상을 반영한다.

> ① 判하였다. 鄕職의 大丞 이상과 正職의 別將 이상인 사람은 죽은 후 田丁을 遞立하고, 향직의 左丞 이하에서 元尹 이상과

96) 배재호,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韓國史論』 66, 2020, 20-28쪽.

97) 將軍이 대표자로 나오는 사례도 보인다(『高麗史』 권4, 顯宗 06년 7월).

www.kci.go.kr

정직의 散員 이하는 나이가 70세가 되면 그 자손이 체립하게 하되 후손이 없는 자는 죽은 뒤에 체립한다.[98]

② 그 軍士는 1科는 別將 이상은 正職 1급을 건너뛰어 높여주고 부모를 封爵하고, 隊正 이상은 정직 1급을 건너뛰어 높여주되 향직을 아우른다[并鄕職]. 軍人은 향직 1급을 건너뛰어 높여 준다. 2과는 대정 이상 및 船頭는 정직과 향직 1급을 더해준다. 軍人 및 梢工·水手는 향직을 더해준다.[99]

①은 현종 19년(1028)의 判으로서 군인의 田丁遞立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그 대상자를 향직과 정직의 두 계열로 나누고 있다. 정직은 규정에서 드러나듯이 별장·산원 등 무반직을 가리킨다. 곧 무반직을 가진 부류(장교)와 향직을 가진 부류(사병)로 구별한 것이다. 다만 장교와 일반 사병 모두 향직을 보유했는데, 이는 ②에서 유추된다.

②는 정종 10년(1044) 定州·長州·元興鎭의 축성을 마무리하고 유공자를 포상하는 내용 중 적의 침구를 방어한 군사들에 대한 조치를 담은 부분이다. 이 규정은 대상자를 1科와 2科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안에서 분류하였다. 1과는 별장 이상, 대정 이상, 군인 등 세 부류로 나뉜다. 대정이 최하위 무반직이므로 대정 이상에 들어가지 않는 군인은 곧 무반직이 없는 일반 사병을 말한다. '軍士'는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중 장교들은 正職을, 군인은 鄕職을 높여주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향직을 아우른다[并鄕職]"라는 표현이다. 여기서 '아우른다[并]'라는 것은 장교들에 대해 일차로 별장 이상과 대정 이상으로 나누어 포상한 다음, 양자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나타낸다. 곧 이들은 정직 승급과 더불어 향직도 올

98) 『高麗史』 권78, 食貨1 田柴科 顯宗 19년 5월.
99) 『高麗史』 권6, 靖宗 10년 11 乙亥.

www.kci.go.kr

려준 것으로, 장교도 향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과에서 대정 등에게는 '正鄕職'을 올려주고 군인 등에게는 '鄕職'을 올려주도록 한 것에서도 장교의 향직 보유를 판단할 수 있다.[100]

한편 ①과 ②의 내용을 비교하면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곧 ①에서는 향직을 정직보다 먼저 언급하고 동일하게 등급을 나눈 데 비해, ②에서는 정직이 우선하고 향직의 구분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현종 19년 단계에서는 향직의 위계가 중요한 준거가 된 반면, 정종대에 들어와서는 정직의 비중이 커지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처음 향직이 보편적 위계로 채용된 상황에서 규정력이 컸지만, 전쟁이 종료되고 체제가 안정기로 들어가면서 다시 정직의 비중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군사는 무반직을 가진 장교와 그렇지 않은 군인으로 구성되면서도 보편적으로 향직을 보유하였다. 향직은 군인의 서열을 하나의 체계로 편제하는 것이었지만, 정직(무반직)도 또 하나의 위계를 구성하였다. 이것은 군대 지휘라는 직능과 연동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위계인 향직과 성격을 달리하기에 구분하여 운용되었다.

여기서 추가로 짚어볼 부분은 무산계의 향방이다. 전술한 목종 2년 기사에는 군사에게 무산계를 주는 조치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후에도 군사들의 무산계 보유를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위 기사에는 무산계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 그리고 장교들도 향직을 보유한 것을 보면 다시 무산계를 보유하는 상황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무산계는 도입 초기에 무반직을 대상으로 일시 운용되었다가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일반 군인

100) 이 기사에 나오는 향직 보유와 관련하여 武班이라고 보는 견해(武田幸男, 「高麗時代の鄕職」, 『東洋學報』 47－2, 1964)와 하급 군인이라고 보는 견해(김미엽, 앞의 논문, 1991)가 있다. 그런데 내용상 향직은 장교와 군인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는 양자를 아우르는 보편적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www.kci.go.kr

의 위계로 사용되던 향직이 무산계를 대체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무산계가 당초 무반직의 위계로 수립된 것이라는 점과 고려에서 정직이 향직과 병렬적으로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정직이 무산계 기능을 흡수한 측면도 존재한다. 정리하자면 처음에 장교와 사병의 위계가 무산계와 향직으로 나뉘었으나 향직이 전체를 아우르는 보편적 위계로 자리를 잡으면서 장교직(정직)이 무산계 기능을 흡수하게 된 것이다.

고려가 교섭 여진인에 대해 장군직과 향직을 이원적으로 운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正職·鄕職 운용 원리를 채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우선 고려의 장교가 정직과 향직을 함께 가진 것처럼 여진의 장군직 보유자 또한 향직을 띠고 있었다. 여기서 향직은 보편적 위계로 기능하였다. 고려는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포상으로 향직을 활용하였고, 같은 원리에서 고려와 교섭하는 여진인에게 향직을 주었다. 여기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었겠지만, 다수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위계로서 기능했음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군사의 정직은 장교로서 가지는 직능과 위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여진 부락에서 추장급이 가진 위세를 반영하는 장군직 또한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여진 추장의 장군직은 무산계의 속성을 띠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반적 위계로서 향직의 기반에서 부가되는 직능과 위세를 반영한다. 이 역시 군사에서 향직을 기반으로 정직이 부가되는 것과 유사한 면모이다.

이러한 이원적 운용체계에서 특정인의 지위를 표현할 때 군사의 경우 정직을 우선하였다. 앞서 지적했듯이 군사의 직제에서 정직이 향직에 우선하는 추이가 발견된다. 마찬가지로 장군직을 보유한 여진 추장은 따로 향직을 밝힐 필요가 없었다. 이 때문에 외형상 군사가 정직 보유자와 향직 보유자로 나뉘는 것처럼 여진인도 장군직 보유자와 향직 보유자로 구분된 것이다.

www.kci.go.kr

결국 고려가 교섭 여진인에 대해 장군직과 향직을 이원적으로 운용한 것은 군사 직제를 원용한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곧 교섭 여진인을 '군사'의 맥락에서 편제한 것이다. 여진과의 교섭이 결국 附籍을 통한 인적 지배의 실현을 지향한다고 보면, 이것이 기미주 설치로 나아가는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되는 내용이다. 고려가 장성 축조 과정에서 여진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용하는 모습은 그러한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5.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 현종-문종대 여진 교섭의 여러 양상 중 대표자에 대한 장군직·향직 수여 양태를 분석하고 그 맥락과 의미를 찾아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에 고려와 교섭하는 여진인의 대표자는 '추장'으로 지칭되거나 별도의 칭호를 쓰지 않았으나 점차 장군직을 띤 사례가 많아진다. 이는 당·송에서 蕃長들에게 적용하던 무산계를 원용한 것으로, 현지의 군사권자로서 위세를 공인하는 것이었다. 장군직은 여러 직함이 보이는데, 직함을 바꾸어주거나 특정인이 시기에 따라 다른 장군직을 사용하는 사례도 여럿 보인다. 이를 통해 대략 歸德將軍→懷化將軍→柔遠將軍→寧塞將軍→奉國將軍의 서열이 추출된다. 대다수 사례가 이 순서에 부합하지만, 여기서 벗어나는 사례도 종종 보인다. 이 중에는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고려와의 관계 변화에 따른 굴곡으로 짐작된다. 일부는 부친의 장군직을 세습하며 일찍 높은 장군직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고려와의 관계 약화에 따라 서열이 낮아지는 양상도 유추된다.

www.kci.go.kr

鄕職은 본래 고려초기 중앙 정계에서 사용하던 것을 여진인과 향리에게 수여하는 위계로 활용한 것이다. 여진인에 대한 향직 수여는 현종 9년을 계기로 전면화되었으며, 이후 교섭 여진인 다수에게 부여되는 보편적 위계로 운용되었다. 특히 거란에서 太史(太師)나 大完(大宛) 등의 관직을 받았던 여진인이 고려의 초유에 응할 때 향직으로 바꿔주는 양상이 보인다. 이는 향직 수여가 여진인을 고려의 질서로 편제하는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교섭에 참여한 인원이나 장성 전설 때 공헌한 여진인들에게 수여한 職과 爵은 향직을 말한다. 다수의 인원에게 爵은 사여하거나 높여주는 사례도 보이는데, 이를 통해 향직이 보편적 체계로 운용되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장군직은 현지의 위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세습의 성격을 띠었다. 반면 향직은 고려가 수립한 체계에 여진인을 편입하는 것으로서 고려 정부와의 관계가 중요하였다. 따라서 장군직 보유자는 기본적으로 향직도 보유하였다. 그런데 교섭 기사에서 양자를 함께 칭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보면, 추장급은 장군직을 우선 칭하였고 향직만 가진 사람은 장군직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문종 27년 기미주 도령 등에게 장군직·향직과 이름을 내려준 기사를 보면, 기존 장군직 보유자는 서열이 더 높은 장군직을 받았고, 향직을 가진 사람은 새로 장군직을 받거나 고위 향직을 받았다. 그리고 향직이 없던 사람도 일괄적으로 향직을 주었다. 이러한 내용은 향직이라는 보편적 체계에 기반하여 장군직이 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원적 체계는 고려의 군사가 正職과 鄕職을 공유한 것을 원용한 것이다. 고려의 군사는 보편적 위계로서 향직을 바탕으로 직능에 따라 정직이 운용되는 형태로서 정직의 규정력이 더 컸다. 마찬가지로 여진 추장도 향직의 보편적 체계를 통해 고려의

www.kci.go.kr

질서에 편입된 상황을 반영하면서 장군직을 통해 현지에서의 위세나 고려에 대한 공헌을 담아내었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자료

『高麗史』, 『新唐書』, 『金史』

2. 연구논저

金庠基, 『東方史論叢』, 서울大學校出版部, 1974

朴玉杰, 『高麗時代의 歸化人 硏究』, 國學資料院, 1996

金南奎, 「高麗 睿宗代의 對女眞政策 : 睿宗 2年 對女眞戰의 原因에 대한 考察을 중심으로」, 『慶大史論』 10, 1997

金美葉, 「高麗前期 鄕職·武散階의 重複支給硏究」, 『誠信史學』 9, 1991

金庠基, 「女眞關係의 始末과 尹瓘의 北征」, 『國史上의 諸問題』 4, 1959

김순자, 「고려중기 국제질서의 변화와 고려-여진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UCI : I410-ECN-0102-2021-900-000685997

김진곤, 「10세기-12세기 초반 고려의 북방지역 女眞人 관리 정책」, 『韓國史學報』 95, 2024
DOI : 10.21490/jskh.2024.5.95.125

羅滿洙, 「高麗前期의 對女眞政策과 尹瓘의 北征」, 『軍史』 7, 1983

노명호, 「해동천자의 '천하'와 번(藩)」,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배재호, 「고려전기 武散階와 鄕職의 수여 배경과 운용」, 『韓國史論』 66, 2020
UCI : I410-ECN-0102-2021-900-001332811

朴賢緖, 「北方民族과의 抗爭」, 『한국사』 4, 1974

宋容德, 「고려의 一字名 羈縻州 편제와 尹瓘 축성」, 『한국중세사연구』 32, 2012
UCI : I410-ECN-0102-2021-900-000686005

신수정, 「고려 문종대 女眞의 동향과 고려 영토」, 『崇實史學』 30, 2013

신안식, 「고려전기의 북방 영토의식과 이민족 인식」, 『한국중세사연구』 50, 2017
UCI : I410-ECN-0102-2021-900-000124922

www.kci.go.kr

윤경진, 「고려초기 外夷 인식과 黑水의 실체」, 『한국문화』 106, 2024
DOI : 10.22943/han.2024..106.004
윤경진, 「고려 현종-문종대 女眞 교섭의 추이와 인식 변화」 『사림』 93, 2025
DOI : 10.20457/SHA.93.4
李美智, 「고려 전기 異國人 入境의 유형과 실상 : 來獻·來朝·來投·來附를 중심으로」, 『한국중세사연구』 43, 2015
UCI : I410-ECN-0102-2021-900-000113189
이바른, 「고려 전기 여진 왕래와 '내부(內附)'의 성격」, 『한국중세사연구』 67, 2021
UCI : I410-ECN-0102-2022-900-000999765
林敬熙, 「高麗前期 女眞人에 대한 '將軍'과 鄕職 授與」,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임형수, 「고려전기 女眞에 대한 武散階 授與의 양상과 특징」, 『한국중세사연구』 51, 2017
: UCI I410-ECN-0102-2021-900-000906755
추명엽, 「고려전기 '번'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현실』 43, 2002
추명엽, 「고려의 다원적 종족 구성과 '我國·我東方' 의식의 추이」, 『역사와 경계』 109, 2018
DOI : 10.52271/PKHS.2018.12.109.109
추명엽, 「고려 '동번(東蕃)' 여진문제의 국제환경과 정벌 추진세력의 구상」, 『동북아역사논총』 79, 2023
DOI : 10.23037/dyn.2023..79.005

江原正昭, 「高麗に州縣郡に關する一考察 : 女眞人の高麗軍への編入を中心にして」, 『朝鮮學報』 28, 1963.
武田幸男, 「高麗時代の鄕職」, 『東洋學報』 47-2, 1964

www.kci.go.kr

〈Abstract〉

The Goryeo government's bestowal of 'military leader status' or 'local posts(nominal)' to the Jurchens in the dynasty's early half, and its meaning

Yoon, Kyeong Jin

Examined in this study is the practice of the Goryeo government bestowing to the Jurchens in the dynasty's North, either a status as a military leader(將軍職) or a nominal local post(鄕職), as part of its overall efforts to maintain a relationship with the Northern tribes, since the reign of King Hyeonjong and through the reign of King Munjong. Examining the manner in which they were bestowed, and the meaning of bestowing such dual merits, will be the focus of this article.

At first, in the early years the Goryeo government addressed the Jurchen representatives as 'tribal leaders(酋長), then it chose to adopt the Chinese practice of providing border tribal elders(蕃長) with Military-based hierarchy ranks(武散階), and began bestowing the aforementioned military leader status to the Jurchens in the north. We can find various ranks from cases of bestowals such as Bongguk(奉國), Yeongsae(寧塞), Yuweon(柔遠), Hwehwa(懷化), Gwideok(歸德), from which we can also sense some shifts in their relationship with Goryeo.

Meanwhile, the bestowal of local posts("Hyangjik, 鄕職") to the Jurchens employed no other than Goryeo's own old

www.kci.go.kr

tradition of providing entities regarded important by the government with such posts. This nominal local status structure was used as a general platform to manage the Jurchens. Overall, while the Jurchens who had the military leader status also had such local posts, but they generally preferred the former or put it in front of their title.

This practice of a dual-status provision was modeled after the Goryeo institution concerning soldiers who had both Jeongjik(正職, regular obligations) posts and Hyangjik ranks. Incorporated into this kind of structure, the Jurchen tribal leaders operated within the confines of such Goryeo-centric order, and wielded power in their own habitat with the Goryeo-bestowed military leader status, while serving the Goryeo government in such capacity.

Keywords : Jurchens(女眞), a military leader(將軍職), a nominal local post(鄕職), Military-based hierarchy ranks(武散階), regular obligations(正職)

www.kci.go.kr